

[]분사기 []전자총격기 []석궁 소지 허가 신청서

※ 뒤쪽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(앞 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일자	처리기간	5일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		
	직업	운전면허번호		
	주소	전화번호		
재 질				
형 식				
제 조국 및 회사명				
명칭 및 제조번호				
길 이				
중 량				
용 도				

「총포·도검·화약류 등 단속법」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경찰서장 귀하

첨부서류	1. 신체검사서(분사기·전자총격기의 경우에는 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은 첨부하지 아니합니다)	수수료
	2. 분사기·전자총격기 또는 석공의 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	3,000원
	3. 사진(가로 2.5cm, 세로 3cm)	

유의사항

- ◆ 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공의 출처 증명서류는 입수경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.
 - 가. 기존 허가된 경우는 해당 소지 허가증
 - 나. 소지 허가된 분사기·전자총격기·석공으로서 상품화된 경우에는 해당 소지 허가증 반납 증명서류
 - 다. 수입 또는 양도의 경우에는 수입면장
 - 라. 국내제품인 경우에는 제조명세서

처리절차

